

2000년 반성폭력 운동의 방향 논의와 4기 연대회의의 계획 수립을 위한 연대회의

일시 : 2000년 3월 1일 낮 2시

장소 : 연세대 백양관 211호

[순서]

1부 2000년 반성폭력 운동 방향 논의

1. 성폭력 개념을 둘러싼 담론 다시보기

- 1) 여성운동단체들에서 생산된 성폭력의 의미와 그 정치적 효과
- 2) 2000년 연대회의, 우리는 왜 또 다시 성폭력 개념을 이야기하는가!

2. 대학내 반성폭력 운동 돌아보기

- 1) 반성폭력 학칙제정운동
- 2) 성교육
- 3)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응활동

2부 4기 성폭력 연대회의의 방향논의

1. 4기 연대회의의 목표 및 방향설정

2. 활동계획

시기별 활동

상시적인 활동

3. 운영계획

역할분담

[1. 성폭력 개념을 둘러싼 담론 다시보기]

*이 글은 심영희, 『위협사회와 성폭력』(나남, 1998년 9월)과 변예정, 성폭력의 의미 구성과 여성의 차이 (『성학술지』 2007년 1호), 한국 성폭력 상담소 역음, 동년, 1999년 3월)의 내용을 참조하여 쓴 것입니다.

여성운동단체들에서 생산된 성폭력의 의미와 그 정치적 효과

1. 성폭력 개념이 등장해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나?

성폭력 문제는 1980년대에도 간헐적으로 이슈가 되기는 했지만 이것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것은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몇몇 센세이셔널한 사건들(변월수 사건, 김부남 사건, 김보은 사건 등)이 언론에 집중적인 보도를 받고 대중의 관심을 끌면서부터로 보인다. 그 이전 1983년 한국 여성의 전화 개소시 아내 구타를 문제화하면서 주부들을 설문조사했던 결과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그 이후에는 인신매매와 매매춘 역시 문제화되며 표면에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초 성폭력에 관련하여 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었고 대중적 관심과 맞물리며 성폭력은 점차 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된다. 1991년에는 여성주의적 상담을 표방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개소한다. 1992년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성폭력 문제를 중점사업으로 택하고 성폭력 특별법 제정 추진위원회를 설치, '한국 여성의 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대구 여성회', '김부남 사건 대책위원회'와 함께 올바른 성폭력 관련법의 입법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성폭력 특위의 3년간의 활동과 일반 시민, 정치권의 공청회 등을 통해 1994년 1월 특별법이 제정된다. 그 후 특별법은 1995년 1월과 1997년 8월 두 차례 개정된다.

대학 내 여성주의자들의 반성폭력 운동 역사는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2. 성폭력 등장 이후 담론들

성폭력이 사회의 전면으로 등장하면서부터 생겨난 담론들(여성단체, 국가 기관, 법, 언론, 학계 등에서 발표된 글들과 말들)은 주로 여성과 남성을 잠재적인 피해자/가해자로 이분화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성/남성이라는 본질적으로 고정된 젠더를 성폭력의 피해자/가해자로 설정함으로써 여성들간의 섹슈얼리티의 차이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여성들을 잠재적인 피해자로 규정하면서 여성을 상대로 한 성폭력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는 등의, 오히려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또한 피해자인 여성의 입장을 드러내기 위해 의도하지 않았지만 성폭력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 여성단체들은 '우리 사회의 규범적인 여성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난다. 이것은 다시 규범적이지 못한 여성들의 성에 대해서 설명하기 어려워지며, 여성들에게나 남성들에게 모두 '일반적인 여성은 이러이러하다'고 계속해서 설명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반면 성에 대해서 더 개방적인 여성의 태도는 많은 여성들이 앞으로 성에 있어서 개방적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보다 '일탈적인' 태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성폭력을 문제화하는 정치학은 어떠한 이해를 대변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까지 성폭력의 규정에 따른 여성의 섹슈얼리티 통제는 성폭력의 위협을 강조해서 생기는 문제라기보다는 성폭력의 의미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즉 누구의 이해를 어떻게 관찰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집단이 각자의 성정치학을 견지한 채 서로 격돌하면서 생기는 문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을 가시화한 역사를 살펴볼 때 여성 단체의 결집된 힘도 중요했지만 남성 집단의 이해도 관찰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즉 자신의 아내, 딸, 며느리, 누나가 성폭력을 당하는 것은 참을 수 없으며 순결한 여성을 성

폭력한 가해자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는 남성들의 이해도 성폭력을 가시화한 원동력이 되었다.¹⁾

이것은 매스컴을 이용할 때도 드러나는 문제점인데, 성폭력을 이슈화시켜 성폭력 문제를 공공의 장으로 끌고 나간 것은 매스컴을 잘 활용한 한 예라고 할 수 있지만, 미디어 역시 자신의 입맛에 맞을 때에만 보도해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성폭력을 이슈화시킬 때 ‘목숨보다 귀한 정조’라는 유교적 가부장적 담론의 정권 이데올로기를 이용한 것이다. 실제로 여성주의적으로 너무 급진적으로 나가거나 분리적으로 나가면 보도해주지 않고, 여성이 약자이고 보호해줄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만 이를 보도해 준다. 이런 점에서 미디어도 하나의 권력이라고 볼 수 있다. 후에 법안의 내용에는 평등적 입장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넣기를 주장했으나 이는 결국 채택되지 않고 입법화되었다. 여기에서 아직도 유교적 전통, 가부장제가 막강하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여성운동마저 전략적으로 가부장적 담론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대항담론의 발발이 안 서는 현실을 보여준다.²⁾ 이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쾌락을 중요시하는 여성이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을 때 그 여성을 피해자라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또는 결혼의 의무 가운데 하나가 성관계라는 것을 전제하여 남편이 아내를 강간하는 것도 우리 사회에서는 가시화되지 않는다.

또한 힘 여성 범죄로서 성폭력을 보는 사람들은 강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적이고 제도적인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성폭력 개념과 관련한 논쟁

1991년 4월부터 1992년 7월에 성폭력 대책에 대한 특별법(안)이 만들어지기까지 성폭력 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여성단체들이 모임(성폭력특위)을 가지면서 성폭력 개념을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다. 이전까지는 성폭력을 크게 강간, 아내 구타, 매춘, 인신매매 등으로 규정하였는데 다른 의견이 개진된 것이다. 결국 성폭력 정의에 대한 논쟁은 ‘성적인’ 의미를 강조한 폭력으로 종결되었다. 그것은 국민 정서상 성폭력을 강간, 성추행 등 성적인 의미로 생각한다는 것이 그 하나이고 두 번째는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정의할 경우 범위가 너무 넓어져 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 마지막은 운동의 전문성확보라는 차원에서 다음 기회에 다른 폭력을 이슈화하며 여성 문제를 여러 번 사회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이다. 여기서 ‘성적인’ 것의 의미는 성별(gender)의 하위범주로 개념화되었다.

데이트 강간

성폭력과 성관계를 분리할 수 없다는 성폭력 연속선의 개념은 공식적으로 문제화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데이트강간의 예방과 대책은 평소 자기 주장을 분명히 하는 태도 등 개인적인 대책으로 일관되어 있다. 물론 남녀 각각 성폭력에 대해 개인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대책들은 성폭력의 연속선을 보여 주기에는 역부족이다. 뿐만 아니라 성문화를 급진적으로 문제 제기하거나 여성의 차이에 따른 섹슈얼리티 구성을 드러내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트 강간으로 과도하게 일반화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성폭력 연속선 개념은 남성의 성적 주도권과 여성의 수동성이라는 우리 사회 성문화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지만 여성을 성적인 각본의 희생자로 간주하여 여성의 욕망 구성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는다.

성적 자기 결정권

성폭력이 가시적으로 문제화되면서 정치적 이슈로서의 섹슈얼리티는 분명 여성운동에 공헌하였다. 그러나 ‘성적인 부분에 폭력을 당한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전략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던져준다. 여성단체들은 피해자들이 피해를 드러내고 성폭력을 사회적인 문제로 정착시키기 위해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명제를 앞세워 성폭력을 인간의 성을 침해한 폭력의 문제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그 의미가 분명히 담론화되지 못하였다.

또한 성적 자기 결정권은 사회구조적 문화적으로 불평등한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주장될 때에는 소극적 평등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³⁾ 남자가 동등한 개인으로 구성되지 않은 현실을 인정하며 동시에 동등한 개인으로 주체를 구성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상대방 의사에 반한다’라는 것은 전제할 수 있다.⁴⁾ 이를 행

1) 섹슈얼리티 강의, p 278

2) 위험사회와 성폭력, p383

3) 위의 책, p379

사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적극적 평등의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데, 즉, 사회구조적, 문화적 조건에서의 여성의 불리한 위치를 고려한 적극적 평등의 개념이 주장되고 있는 것이다. 몸의 권리, 여성의 불리한 위치를 고려한 평등이라는 개념들이 그것이다.

법담론에 대항하여

권력관계가 개입되어있는 경우라도 성폭력이 아닌 폭력의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법에 호소하기가 그나마 쉽다. 그러나 성폭력의 경우는 여성에게 특수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법에 호소하기가 쉽지 않다. 여성단체의 정치학은 성폭력은 성관계가 아님을 강조하며 피해자 여성이 극도의 '공포와 수치심'을 느껴 저항하기보다는 무력해지기 쉽다는 것을 지적하고 여성의 수치심과 연관된 성폭력의 특수성을 인정하며 저항 가능성 여부로 성폭력을 입증하려는 법담론에 저항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조건 속에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 법담론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저항을 증명하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다.

새로운 정치학의 필요성

가부장제라는 문화 결정론에만 기댄다면 차별적 억압의 측면을 제외한 성적 차이들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가부장제는 여성을 한결같이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 만드는가? 여성의 성은 남성보다 더 억압적인가? 그렇다면 이러한 가부장적 문화는 누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여성이라는 범주 안에서도 다양한 성적 차이들과 맥락이 존재함을 인정해야 하며 각각 다르게 존재하고 있는 여성들이 성폭력의 의미를 각각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한편, '몸의 고통'은 피해자들이 성폭력의 의미를 해석할 때 일정한 준거점을 제공한다는 이야기도 있다.⁴⁾

또한 사회 문화적인 지지도에 따라 피해자들이 성폭력이라고 느끼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예를 들어 성폭력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에 따라 피해자들이 성폭력이라고 느끼지 않았던 것을 성폭력이라고 느끼기도 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4) 섹슈얼리티 강의, 305

5) 위의 책, 312

[1. 성폭력 개념을 둘러싼 담론 다시보기]

2000년 연대회의, 우리는 왜 또다시 성폭력 개념을 이야기하는가!

- 98년 연대회의 자료집의 성폭력 개념을 중심으로 한
학내 성폭력 개념 및 성폭력 담론 재고찰

0. 들어가며

97년 연대회의 발족 이후 성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대학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99년 남녀 차별 금지 및 시행에 관련 법률이 제정된 이후 각 학교(학교당국)에서는 성폭력과 관련된 사업들이 마지못해 진행되고 있는 듯 하다. 또 해가 지날수록 새터(OT) 내규나 자치규약을 통해 성폭력 사건 신고율이 높아지고 있고 각 학교마다 반성폭력 운동이 구체화되고 있다. 다시 말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의 흐름은 어느 쪽에 의해서든 가속화될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1. 성폭력 개념화에 있어서 여성주의 내부적 고찰의 시도하자.

우리는 기간 성폭력 개념의 정치화에 있어서 논쟁이 있었음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그러한 논쟁의 구체적 내용(성폭력 근절을 위한 연대회의 내부를 포함한)들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성폭력 개념에 대한 논의나 성폭력 개념의 확장 자체가 곧 여성주의의 확산으로 여겨지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성폭력 개념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여성의 시각으로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나 개념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음이 아니다. 다만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정치적 활동으로 되었을 때(여성주의 내에서나 대중적으로) 야기되는 개념적인 혼란과 이러한 혼란 속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이나 활동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문제지점으로 여겨진다. 실제 98년 여성연대 한판을 즈음하여 나왔던 '연대회의 자료집'에서의 성폭력 개념에 대한 부분은 연대회의 내부적으로 완전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하거나, 각각의 단위에서 제정될 학칙에 있어서의 여성주의를 담보해내기 위해 별도의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 제정에서의 원칙'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연대회의 내부에서의 최대한의 안정적인 동의 기반을 가지며 거침없이 대중을 향할 수 있는 성폭력 개념의 정리나 담론을 위한 재고찰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2. 성폭력 개념 정의에 대하여.

기간 연대회의 내부의 성폭력 개념은 '동의 없는 상대방의 성적 자율권 침해'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해를 더하기 위해서 성적 자율권에 대한 명시를 위해 켈리의 연속선 개념이 거의 수용되고 연대회의의 입장화 되었다.

【 켈리의 연속선 개념을 통한 성적 자율권에 대한 명시부분 】

① 양분법적 성폭력 분리론에 대한 반대

성폭력의 양분법적 분리론, 성폭력 형태에 대해서 피해자의 경험이나 느낌, 폭력을 느끼는가의 여부에 대해 묻지 않으며 각각의 성폭력 개념이 양적인 접근을 통해 분리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다.

②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나 이에 따른 시행령을 부분 발제한 듯한 학칙안이 만들어지거나 갑자기 보건소 주체의 성교육이 진행되기도 한다.

②연속선 개념

성에 기반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해지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모두 성폭력이라 칭하며 이러한 것들이 각각 분리된 현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켈리의 연속선 개념을 통한 동의에 대한 명시부분]

①동의의 문제

우리나라와 같이 저항여부로 판별되는 상황에서 성폭력을 동의 여부로 규정하는 작업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기존의 남녀간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 속에서의 동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성폭력을 동의의 문제로 해석하는 것은 남성의 성적 권력을 가부장적 억압체계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라고 반대한다. (동의라는 단어가 섹스가 이용되고 경험되고 권력으로 구성되는지를 고찰하지 않으며 사회구조적 성적 착취를 개인적 경험의 문제로 초점을 이동시키기 때문이다.)

②피해자 주관

피해자의 주관은 성폭력으로의 규정에 있어서 판단 기준으로 제시된다. 외견상의 동일한 형태를 넘어서 '자발적 동의', '이타적 동의', '순응적 동의'로 전적으로 피해자의 주관에 의존한다. 이 때 피해자의 주관의 합리성의 문제는 미국 법정의 '합리적 인간' 상을 도입하여 남성중심성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켈리의 개념을 통한 성적 자율권에 대한 명시는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법제도 상의 성폭력 정의를 비판하고, 성폭력에 있어서 여성의 경험·관점을 도입시키는데 유의미하였다. 또한 우리에게 다양한 반성폭력 운동을 위한 든든한 논리적 근거가 될 수 있었다. 즉 반성폭력 운동의 양보할 수 없는 최소한의 합의 지점으로 긍정적 평가가 이뤄져야 하겠다.

3. 성폭력 개념의 확장에 대하여.

98년 대학 내 성폭력에 대한 답론은 성폭력이 개인적인,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이며, 남녀의 권력 불평등한 사회구조에서 나타나며 동시에 이를 공공연히 하는 기제임이 어느 정도 널리 인식되었다.... 중략.... 외견상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동 여성주의적 답론이 대중적 동의 지반이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성폭력을 정조의 문제로 사고하거나, 성기 중심적인 개념 분리가 되고 있어 성폭력에 대한 사고의 전환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답론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판단되어 진다. -98년 연대회의 자료집 중

98년 성폭력을 둘러싼 답론에 대한 평가는 대학 사회에서 성폭력이라는 것이 사회 문화적인, 즉 남성중심적 사회 구조 속에 기반한 권력의 문제라는 인식 지반의 확대를 가져왔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이는 다소 여성운동 진영을 위주로 한 판단일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연대회의가 진행했던 성의식에 대한 설문 조사는 '의식 수준에 대한 설문'이라는 특수성에 기인해서 정확한 인식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97년 연대회의 발족 이후 실제로 여성운동 단위는 반성폭력 학제제정 운동이나 개개의 사건 해결에 있어서 성폭력이 대학 사회의 남성중심적 문화나 권력구조의 문제임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야 하는 등의 지금도 성폭력 문제에 있어 대중적 이해를 확장시켜야 할 큰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현재 성폭력을 둘러싼 답론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어렵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기간의 반성폭력 활동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을 둘러싼 지배적 답론의 변화가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성폭력이 외견상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것들이 단순한 수치심이나 처벌과 연결되었을 때의 우려가 남성 일반에게 더 크게 보여지며 상대적으로 피해자의 주관과 관련한 합리성의 문제가 오히려 논쟁의 중심이 되어 궁극적으로 반성폭력 운동을 통한 대학 내 여성주의적 답론 재구성 및 모든 성폭력 근절이라는 목표를 구성해내지 못하고 있다.

1) 성폭력의 '폭력성'

· 성폭력을 '폭력'으로 규정

① 폭력으로의 규정의 의미

특별한 개인에게 가해질 수 있는 성범죄가 아니라 여성의 신체적 성적 존재로서의 권리의 침해이며, 남성의 여성 지배를 유지하는 사회적 통제기제로 분석된다. -생략-

② '폭력' 규정의 한계 → '성폭력'으로의 의미 규정 필요

성폭력의 사회 통제적 성격을 들어내는데 기여한다. 그러나 폭력이 됨으로서 명시적인 폭력만이 가능해지며, 이것은 곧 여성의 저항이 필요하다거나 피해자 유발 논리와 같은 사회 통념을 그대로 유지시킨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은 강제에 기반한 여성 폭력을 경험하게 된다. 성폭력 개념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여성이 갖는 억압과 배제의 경험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폭력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많은 여성들이 경험하는 학대의 경험이 단순히 폭력이 아닌 강요되는 성 및 여러 가지 정신적·심리적 학대임을 알고 '성폭력'으로의 인식이 요구된다.

여성에 대한 폭력 → 성폭력

성폭력에 있어서 여성이 경험하게 되는 단순 폭력들 역시 성폭력과 완전하게 분리되지 않는다. 아내구타의 경우 신체에 초점을 둔 경우의 폭력 개념에서, 성권력을 이해를 통한 성폭력 개념으로 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성의 피해대 경험은 물리적 폭력과 더불어 강요된 성 및 여러 가지 정신적·심리적 학대도 있음이 드러났으며, 이를 통한 구타의 개념이 확장되었고 새로운 학대를 명하기 위한 단어 발달과 더불어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남성 폭력을 각각의 분리된 현상으로 보는 대서 벗어나 '성폭력'이라는 보다 일반적 현상의 일부로 보게 되었다.

2) 성폭력에서의 '성'

· 성적인 행위 뿐 아니라 성별에 기반한 행위

성폭력이 권력의 문제이며 성을 통한 남성의 권력행사로 사고될 때, 여성이 겪는 많은 경험을 성폭력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고되는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의 부과'로 생각되는 경향이 있지만 성폭력은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 뿐만 아니라 성에 기반한 권력의 문제임을 염두에 둘 때 성별에 기반한 행위와 성에 기반한 행위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 차별의 폭력성

성폭력에서의 성별에 기반한 행위를 말함에 있어서 이미 성차별이라는 단어가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 중략. ... 성폭력은 성차별과 명확히 분리시켜 사고할 수 없으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 경험에 있어서 중첩되어 있다.

성폭력은 우리사회의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기반으로 한 성차별의 문제이다. 즉 성차별은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불평등한 성별권력관계를 기반으로 유지 발생한다. 성폭력은 여성의 성적 자율권에 대한 침해일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사회적 관계에서의 여성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성차별의 한 측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

동시에 성차별은 성폭력이기도 하다. 성차별은 그 안에 담겨진 성권력의 폭력성으로 단순한 차별로만 볼 수 없게 한다. ... 중략. ... 물리적 폭력은 다른 통제 방식들이 실패했을 때에만 사용되며 은근한 회유, 협박, 강제 그리고 선택의 배제가 여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사용된다. ... 중략. ... 모든 차별은 그것의 피해자에게는 폭력이다. 그것은 폭력이다. 차별화에 대한 개념은 폭력 속에서 포함되어야 하며, 폭력의 범위는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차별의 폭력성에 더욱 민감해야 한다.

98년 연대회의 내부의 성폭력 개념 확장에 대한 논의는 성폭력을 단순히 폭력으로 규정함에 있어서의 한계들을 지적하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배제 및 통제를 성폭력으로 인식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아내구타의 예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남성폭력을 각각의 분리된 현상이 아닌 '성폭력'이라는 일반적 현상으로 규정한다. 단순한 성적인 행위를 포함하여 성에 기반한 남성의 권력 행사가 여성에게 억압적 경험이 되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남성중심의 구조 속에서 성별에 기반한 모든 폭력이 성폭력으로 말해지는 지점은 사실 성폭력 담론을 중심으로한 여성주의 내의 유일한 논쟁 지점이었으나 기간 이러한 논의가 지속적인 발전을 가지지 못함으로써 보다 설득력 있는 성폭력 개념의 정치화를 이뤄내지 못한 것이 아닌가 싶다. 즉 연대회의 자료집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성차별적인 발언 및 고정 관념적인 성별 분담 역시 성에 기반한 폭력으로 여성에게 매우 억압적이나 이러한 성별에 기반한 차별이나 '아내구타'와 같은 개념들을 '성폭력' 개념으로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난 연대회의의 입장을 어떤 사람은 우스개 소리로 '세계 어

디에 내어놓아도 급진적이다'라고 한다. 이러한 우리의 여성주의적 급진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대중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개념으로의 재정립을 제안한다.

[2. 대학내 반성폭력 운동 돌아보기]

성폭력 학칙 제정 운동

99년 5월 성폭력 연대회의 실무 워크샵에서 우리는, <남녀차별 구제 및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것이라는 소문과 관악의 반성폭력 학칙이 제정된다는 사실에 위기감을 느끼며 연대회의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긴장된 논의를 한 적이 있다.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온다면 그동안 준비해왔던 반성폭력 학칙 제정운동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학칙에 당할 것이라는 생각에 소름끼치는 팔뚝을 부여잡고 온몸을 떨며 교육부에 직접 투고를 하자, 싸움을 하자... 등등... 이제 2000년이 두달이나 지났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1. 각 학교별 상황

반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의 상황을 보았을 때, 관악이 가장 많은 운동이 진행된 곳이다. 98년 반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친 관악은 공동대책위를 꾸려 여성운동단위들뿐만 아니라 단대 학생회(사회대, 자연대)까지 학칙제정운동을 진행하였으며, 교육사안으로 총장실 점거 투쟁을 진행할 때 반성폭력 학칙 제정을 요구안에 포함시켜 반성폭력 학칙을 제정하겠다는 학교측의 확답을 받아놓은 상태이다.

97년 총학선거가 끝나고 총집 내부에 성정치위원회가 꾸려졌다. 성정치위원회 인자가 원래 여모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이후에 '신교수 퇴진과 성폭력학칙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나 공대위 해소 이후의 성폭력학칙제정 활동들은 여모와 성정치위원회가 함께 했다. 97년 겨울부터 구상했던 공대위도 98년 41대 총학선거가 시작되면서 실질적으로 꾸려졌는데, 처음에 생각된 방식은 단대에 책들을 모두 세우고, 여모의 2-3 명이 참여하는 방식-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결국 사회대와 자연대만이 결합하는 식이 되었다. (실질적으로 모두 여모 사람들이었다.) 97년 선거 당시 당선여부에 상관없이 학칙제정에 공동연대하겠다는 내용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셈이다. 이는 여모가 정치조직들에게 정식으로 적극적인 제안을 하지 않았다는 데에도 문제가 있지만, 아무튼 공대위에 여모 사람이 아닌 운동세력을 끌어들이는 일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다. 공대위에서는 소규모의 집회를 두 번 정도 열었고 본부와 성폭력학칙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물론 이러한 활동들에는 계속적인 여론화 작업이 잇달았다. 그밖에도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중재를 맡기도 하였다.

98년 가을에 공대위가 실질적으로 해소되었고 이후 본부와의 논의는 총학성정치위원회에서 주로 담당하였다. 학생부처장을 비롯해 몇몇의 교수님들과 정기적인 테이블을 마련했고 어느정도 논의가 진행되어 총학에서 제안한 안을 기초로 성폭력 학칙을 제정할 것에 어느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다가 99년 3월, 학생부처장이 바뀐 후 지금까지의 논의를 뒤엎고 '인권침해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을 들고나와서 현재 논의가 진행되기는 하지 만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

한편, 학내 공론화 작업은 지난 4월 총학 성정치위원회와 학칙의제테이블을 중심으로 한 활동단을 통해 이루어졌다. 각 단대를 중심으로 성폭력학칙제정 활동단 '바로지금'이 꾸려졌으며 단대별 공청회와 중앙공청회, 설문조사, 집회 등이 진행되었고 이후 본부에 우리의 의지를 천명하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이다. 학칙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본부와의 투쟁을 힘있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관악 성폭력 학칙제정 운동 평가글(99관악 워크샵 자료집에서 발췌)

서울시립대의 경우 성폭력 예방대책위원회에서 시행세칙을 제정하는 데에 역시 예대위의 일원으로 들어가는 총여학생회가 주도하고 있다.

지금 현재 학교측에서 성폭력에 관련된 학칙을 제정하려는 학교는 연세대와 수원대 두곳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 두학교에서는 먼저 학교측에서 학칙제정을 제안한 상태이며, 연대는 이미 여학생처를 주축으로 학칙 가안을 작성하고 있다.

그 밖에 서울·경기지역 소재 몇몇 대학을 알아본 결과, 반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이 계획에 있으나 공론화작업

이외에 실질적인 제정운동을 진행하는 곳은 없었다. 98년 총학생회장의 성폭력 사건을 기점으로 고대에서는 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의 템포가 빨라졌으나, 98년 10월에 반성폭력 학칙 가안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으며, 전학대회에 상정하여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으나 99년에 전학대회에 상정되지 못하면서 반성폭력 학칙제정운동에 관련된 외부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2000년에 들어오면서 학칙제정운동에 관한 여론화 작업과 학칙 가안에 관한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

학교측의 움직임이 잡히는 대학 또한 2곳이었으나 교육부 지침에 학칙의 제정이 권유되어 있는 상태에서 학교측에서 어느 정도 계획이 있는 대학이 대부분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2. 교육부 지침에 대한 사소한 분석

1999년 6월 말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시행에 따른 교육부 지침이 각 대학으로 내려왔다. 이후 각 대학 본부측에서는 다양하게 성폭력 관련한 정책을 마련하고 나름대로 교육부 지침에 맞추어 준비를 진행하였다. 고대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지침에서 지정하였듯이 고충상담이 가능하도록 학생생활상담소(?)의 담당자에게 고충 업무를 부가하여 성폭력 상담소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으며, 연대나 수원대의 경우는 역시 교육부에서 마련하라는 세부계획(학칙, 내부규정 등)으로 학칙을 선택하여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서울 산업대 역시 교육부 지침의 편집안으로 보이는 성폭력 정책안을 내놓은 상태이다.

99년 9월에 열린 한국 성폭력 상담소의 [대학내 성폭력관련 정책 공청회]에서 우리는 각 학교별 보다 생생한 상황을 판단할 수 있었다. 학교본부측의 구색맞추기식 여성정책, 물론 실제 교육부 지침이 세부적으로 상담소의 개설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고충상담자 충원을 강조하고 있지 않으며 올바른 성폭력의 개념을 담고 있지도 않아 문제점이 많긴 하다. 그러나 학교측은 더욱 심각하다. 우선 성폭력 정책을 위한 예산 책정을 제대로 하려는 마음이 없으며, 철저한 예산절감을 통한 여성정책을 시행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적은 예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느 정도 생각있는 이들이 여성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한다면, 어느정도는 괜찮은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정책을 담당하고 있다는 이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더 기가막힌다. 성폭력의 발생원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K대 학생과장은 이렇게 말했다. "여자측에도 문제가 있다...밤이 늦은 시간이었는데 같이 간것도 문제고, 차를 안타고 거부할 수도 있었는데...그 여학생이 교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가 그것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니 앙심을 품고 신고한 것 같다..."

원래의 주제로 돌아와 교육부 지침을 검토해보자. 교육부의 지침은 우리에게 양날의 칼과도 같다. 어찌되었든 간에 교육부의 지침이 내려옴으로 해서 실제 반성폭력 학칙제정을 하는데 또 다른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 지침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칙제정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 싸워야 할 일이 많다. 우리는 교육부의 지침을 이용하여 학교 당국을 강제하고 학칙을 요구함과 동시에 학칙운동을 통해 여성주의적인 입장을 주장해야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렇다면 교육부 지침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바와 싸워야 할 부분을 골라보자.

1) 교육부 지침을 이용하자!

① 교육환경권

- * 성차별적인 수업에 대한 문제제기

2. 수업상 또는 고용상 적절한 환경 확보를 위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

수업상 또는 고용상 환경은 직원, 학생 및 관계자의 협력하에 형성되기 때문에 성희롱 등 남녀차별에 의한 수업상 또는 고용상의 환경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가. 성희롱 등 남녀차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직원, 학생 및 관계자를 이른 바 골칫거리로 보거나 성희롱에 관한 문제를 당사자간의 개인적인 문제로 처리하지 말 것

나. 성희롱에 관한 사안의 가해자나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주위에서 필요한 배려와 행동을 취하고,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해 유의하여 행동 필요

(1)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주의 촉구

성희롱으로 수업상 또는 고용상 적절한 환경형성에 중대한 악영향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기회를 마련해서 주의를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 강구

(2)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을 보거나 들었을 경우 직접 불러서 상담

피해자는 '무끄럽다', '꼴치거리라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다', '보복이 두렵다'는 등의 이유로 타인에게 상담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음.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불러서 가볍게 상담해 주는 것이 필요함

다. 성희롱이 있는 경우 수업이나 고용이 가능한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상급감독자 등 제3자에게 상담 등의 방법을 적극 활용

성희롱 등 남녀차별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교육부 지침 <별첨 1> 중

• 성폭력적 강사 및 교수에 대한 문제제기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부칙 중

제16조(성희롱의 금지영역) 법 제7조 제1항의 성희롱의 금지되는 영역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가 직장에서 상급자, 동료, 하급자, 협력업체종사자, 파견종사자 등에 대하여 성희롱 하는 경우
2. 교육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 등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가 학습자나 교육용시자에 대하여 성희롱을 하는 경우
3.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및 근로자가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에 있어서 이용자 등 상대방이나 기타 관련자에 대하여 성희롱을 하는 경우
4.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법과 정책의 집행시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나 기타 관련자에 대하여 성희롱을 하는 경우

제17조(성희롱의 대표적 유형) 성희롱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육체적 행위
 - 가. 입맞춤이나 포옹, 위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 나.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다.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2. 언어적 행위
 - 가.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 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다.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라.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희유하는 행위
 - 마.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 바. 회식자리 등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② 학내 성폭력 상담소 개설

5. 성희롱 등 남녀차별 고충처리 일부(교육부 지침 중)

가. 고충상담자의 지정

1) 성희롱 등 남녀차별행위에 관한 고충신청 및 상담(이하 '고충상담'이라 함)이 "직원,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제기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교육부, 시·도교육청 및 각급학교 등에 고충상담을 받는 직원 또는 고충상담에 응하는 상담원 등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 강구(2인 이상의 상담원을 두되, 상담시 고충상담 신청자와 동성의 상담직원이 동석)

3) 시·도교육청 및 각급학교 등에서는 기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 상담요원(상담교사,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 적절활동 병행) 등을 두고 상담을 받을 일시, 장소 및 절차를 직원, 학생, 학부모에게 알려 상담기회 확대 방안 강구

4) 상담요원에 대한 적절한 연수기회 부여 및 교육훈련 지원으로 상담 전문성 제고 방안 강구(상담자 연수기관 : 별첨 참고자료 9, 단체명단 참조)

나. 고충상담자의 업무

- 1) 상담원 등은 고충상담에 관련되는 문제의 사실관계 조사 및 당해 고충상담에 관련되는 당사자에 대한 지도·조언 등으로 문제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해결 노력
- 2) 상담원 등은 위 고충상담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 역량 발휘
- 3) 상담원, 주변 관계자 등은 고충상담에 응함에 있어 관련자의 자존심이나 명예, 인권 등을 존중함과 동시에 알고 있는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 금지(비밀준수 의무 부과)

물론 교육부 지침에 의하면 각 학교별 고충상담기관 설치의 의무규정이 없으며, 오히려 후술로 각 학교 사정에 맞게 자체의 세부계획을 세우라고 하여 학겨 나름의 계획에 맡기는 등 한계가 있는 규정이지만, 우리가 성폭력 상담소의 설치를 요구할 때,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③ 반성폭력 학칙 제정

너무나 어이없게도 이 조항으로 인해 이미 자체에서 학칙을 준비하고 있는 학교도 있다. 그러나 따로 준비를 하고 있지 않거나 학칙 제정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을 근거로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6. 성희롱 예방 등 남녀차별 방지를 위한 역할분담 중 일부(교육부 지침)

다. 대학 등 각급학교(기관)의 역할

- 교육부(시·도교육청)에서 통보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령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을 참고하여 학교(기관)별로 신정에 맞는 자체 세부계획(학칙, 내부규정 등)을 마련하여 시행
- 교육현장에서 학생 상호간의 성희롱 등 남녀차별 방지를 위하여 관련 교과목 수업시 지도하고, 학칙, 내부규정 등으로 문제해결 노력
- 세부계획에 포함시킬 주요 사항
 - 성희롱 예방교육(별첨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 참조)
 - 성희롱 등 남녀차별 방지에 관한 교육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 성희롱 등 남녀차별 방지에 관한 상담자의 지정 또는 고충처리 제도의 마련 등
 - 고충상담원은 가능하면 상담부장, 학생생활연구소 상담요원 등 기존의 인적자원을 활용하되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또는 자원봉사자 중 상담교육 이수자를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으며, 학교의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조치
- 고충상담원 지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처리를 위하여 상담원으로 지정하기 전에 추천을 받는 등의 절차 활용 모색
- 특히, 「교원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학교별로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시행

당연히 이것 또한 유의해야 한다. 특히 [교원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이라고 강조한 부분은 너무나 애매하게 해석되어 악용될 소지가 있다.

2) 교육부 지침의 한계

① 성폭력의 개념

1. “남녀차별”이라 함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배제 또는 제한을 말함.

※ 남녀차별의 내용 : 고용, 교육(교육기회·조건·방법), 재화·시설·용역 등의 제공 및 이용, 법과 정도의 집행에 있어서의 남녀차별을 말함.

2. “성희롱”이라 함은 교육,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교육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학생의 수업상 또는 직원의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함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중

교육부의 지침에서 보면 학교(기관)에서 나타나는 남녀차별과 성희롱을 방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반성폭력 학칙에서 우리가 드러내려고 했던 성폭력의 개념은 개인의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부 지침이 기반으로 하는 <남녀차별구제및금지예관한법률>의 목적이 업무상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부 지침 상의 성폭력 개념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여성주의적 성폭력 담론에서 성폭력의 판단기준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피해자 주관'에 대한 의식 또한 지침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침에 의한 성희롱의 개념에서는 언어적이거나 신체적인 면만을 부각시키고 있어 학내 전반적인 남성중심적 문화, 학교 건물들의 편의시설, 학내 행사 프로그램 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성폭력 또한 배제되어 있다.

그러므로 반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을 진행할 때, 가장 강조하여 주장해야 하는 부분이 여성주의적인 입장에 기반한 성폭력 개념일 것이다.

② 학생-학생, 교수-교수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한 대응

이 또한 남녀차별금지법에 기반하여 있는 교육부 지침이기 때문에 탈락되어 있는 부분이다. 교육부 지침에 의하면 학교별로 세부계획(학칙,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나머지를 채울 수 있도록 해놓았다. 그러나 세부계획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많은 부분이 다르게 진행될 것이다. 이를 채우기 위해 우리는 반성폭력 학칙을 주장하고 제안해야 한다. 학칙은 그 적용대상이 교수·교직원·학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다.

3. 마지막으로...

교육부 지침이 내려온 이후 학교에서는 어떻게 성폭력관련 정책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 시기는 우리에게 호기일 수도, 악재일 수도 있다. 앞에서 교육부 지침을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엄청 당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한다. 그동안 대학내 여성운동 단위들은 오랫동안 반성폭력 학칙제정운동을 준비하고 펼쳐왔다. 그러나 성폭력 학칙제정을 위한 드러나는 활동을 하기보다는 여론화작업에 많은 초점을 맞추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사실 98년만 해도 그러한 활동은 의미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2000년에는 오히려 학칙제정을 선포하고, 학교측에 제안하고, 그 싸움을 알려내면서 공론화시켜야 한다. 아니면 어느날 학교에서 학칙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을지도 모른다.

[2. 대학내 반성폭력 운동 돌아보기]

성교육

1. 성교육이란?

우선 성교육을 어떤 범위까지 다루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성교육에서의 성은 성지식(sexual health & reproduction)을 가리키며, 이에 대한 교육이 성교육만이 이루어 졌다. 그러나 “성교육은 단순한 성지식 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태도, 환상, 가치관, 욕망, 의사소통 방식, 인간 존중과 배려의 방식, 우리 사회의 성문화, 몸의 변화에 따른 인간관계의 변화까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는 여성주의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시대변화에 따른 성교육의 변화

1998년 이른바 구성애의 아우성(아름다운 우리 아이들의 성)이 TV라는 매체를 통해서 성교육이 화제 속에서 방송되면서, 이전의 성교육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다. 그래서 구성애의 아우성의 의미는 크다. 성을 생활의 일부로 끌어들이고, 성담론화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성애의 아우성은 대중 매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이었기 때문에 가지는 한계가 있다. 생명, 사랑, 쾌락의 관계의 정의나 동성애의 문제, 혼전 순결 등에 관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것에 제한된다는 점이다.

3. 학내의 성교육 실태

서울 시립대의 경우를 들어보겠다.

1) 신입생 대상 OT, 새터에서의 강연

- 학교에서 주최한 O.T

1999년 99학번 대상의 변리나씨의 성폭력에 관한 성교육 강연이 있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한 O.T였기 때문에 참여율은 좋았다. 그러나 짧은 시간동안 이루어지고, 일방적인 강의 형식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다. 그나마 2000년도에는 O.T일정이 딱딱하다며 강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성폭력 예방·대책 위원회에서 발간한 성폭력 예방 지침서를 소개하는 시간만 갖았다.

- 새터내에서의 부문강좌

총여학생회에서 단대별로 요청을 받고 강좌를 진행한다. 2-3명의 학생들이 40명 정도의 새내기들 대상으로 하며, 가능한 새내기의 참여를 유도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1999년에는 <스토킹> <술자리에서의 성폭력>에 관한 상황극을 했고, 2000년에는 <광고 속의 성>을 주제로 광고를 비평하였다.

2) 재학생 대상의 강연

지난 1999년 <누리제(총여학생회에서 주최한 여성 문화제)>에서 “남성학”과 “보육원 설치”에 관한 강연과 <성과 친해지기 주간>에서 “내 몸 바로 알기”라는 이름으로 성교육 강연이 있었다. 그러나 7000명의 학생들 중 50여명 정도가 이 강연회에 참석했다. 이렇듯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해서 실효성이 적다. 사실 아무리 홍보를 한다고 해도 자발적으로 강연회에 오는 학생들은 한계가 있는 만큼 사실상 재학생에게는 이렇다할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가?

성교육은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제대로 된 성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의 성에 관한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올바른 성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 그래서 성폭력 문제에서도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이나, 사회적 분위기에 피해자가 더 고통받는 일이 없어 질 수 있다. 개개인이 노력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학내에서 제도적 장치로서 <여성학> 강좌 개설을 들 수 있다. 사실 가장 진보적이라는 대학사회에서도 성담론화는 힘든 상황인데 반해, 이런 수업시간에는 쉽게 성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고, 생각하는 기회를 준다. 그러므로 이런 강의를 확대해 나가고 교양필수로 지정해서 강좌의 위상을 높이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다행히도 1999년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부 지침서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하여 학교측에 성교육 강좌 제도화와 그 위상을 높일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3. 교육(행정)기관의 책임 중 일부(교육부 지침 중)

가.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영 제4조 제1항)

1) 실시회수 및 시기 : 연 1회 이상, 학교(기관)별 실정 감안

2) 교육방법 : 직원 연수교육, 홍보물 발간, 정례조회 활용교육, 부서별 교육, 학생의 경우 관련교과 수업시간 중 학교(기관)별 실정에 맞는 형태를 선택

3) 교육내용

◦ 관련법령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동 법률 시행령, 남녀차별금지기준 및 관련지침 등(별첨 법령 및 기준 참고)

◦ 학교(직장)내 성희롱 등 남녀차별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학교(기관)의 방침 등에 관한 사항

◦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성희롱 등 남녀차별 피해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성희롱 정도 및 지속성에 따른 가해자에 대한 근무부서 변경, 징계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현재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여성학>이 교양선택으로 3학점, <성과사랑>이 교양자유선택으로 2학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1989년 처음 <여성학>이라는 이름으로 강좌가 생기면서 총여학생회에서 마련한 강의 평가서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끊임없이 수렴하여 왔다. 그래서 커리큘럼, 분반, 여성학 관련 도서, 여성 신문, 여성 잡지, 시청각 자료 등을 학교측에 요구할 수 있었으며, 현재의 모습을 만들어 오게 되었다. 또한 1999년에는 수업이 수업에서 끝나지 않고 뒷풀이나 MT를 통해서, 수업을 함께 한 사람들이 총여학생회와도 관계를 갖게 되었으며 현 총여학생회장이 정후보로 출마하는 계기도 마련하게 되었다.

보이는 피해자가 타방 종업원이라는 이유를 들면서 ‘보호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는 논리로 남성 공권력에 일반 여성에게 자행한 성폭력을 정당화하는 행태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1996년 8월

연세대 한총련사때 진압과정에서의 전경에 의한 성추행

1986년 8월 식위참가 여대생들을 전경들이 연행하는 과정에서 여학생들의 가슴을 주무르며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과 성적 폭언을 자행한 사건으로 사건 접수 후 여성계는 성추행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서명운동, 진상조사 기자회견, 공권력에 의한 여학생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관한 건의, 연세대 종합관 진압경찰, 현장진압 책임자, 총지휘자인 경찰청장에 대한 고소, 그발장 접수 등의 활동을 전개했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리되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되었다.

1999년 7월 24일

남양주 경찰서 성추행 사건

7월 24일 구리 지역 강제철거 구단과 철거민 생존권 정치 결의대회 참가자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여대생들을 둘러싸고 가슴과 허벅지, 엉덩이를 때리는 등의 성추행을 자행한 사건. 현재 전국빈민연합을 중심으로 공동대책위를 결성, 대응중이다.

1.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전쟁의 가장 심각한 피해자가 여성과 어린이인 것은 단순히 이들이 약자라는 것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들을 체계적으로 사회적 약자로 만들어 온 가부장제와 긴밀히 얽혀있는 것이다. 전쟁은 가부장제가 폭력적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남성이 여성에게 복종하도록 하는 기초적 메커니즘인 성폭력은 영토를 정복하려는 군대의 행동에 비유할 수 있다. 또한 무기는 남성적 정체성의 한 중요한 요소이며 가부장제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 요소이기도 하다. 전쟁 상황에서 이 모든 폭력적 요소는 여성에게 가공할 폭력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1998, 정진성)

기나간 성폭력의 역사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전쟁시 성폭력이다. 전쟁시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성폭력 또한 존재하지만 상부의 명령 혹은 묵인 하에 성폭력은 조직적으로 일어났으며, 이는 또 다른 전쟁의 수단이었다. 그러나 비단 전쟁 상황에서만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즉 가부장제가 폭력적으로 발현되는 것은 국가간의 무력갈등 시에 여성에게 가해지는 제도적, 무규칙적 성폭력만이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이 아닌 것이다. 자국 내에서의 국가에 의한 대여성 폭력은 전시의 그것보다 더욱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반면 집단적 양상을 띠거나 심각한 폭력의 형태를 띠지 않는 한 밝혀지는 것조차 쉽지가 않다.

국가에 의한 여성에 대한 집단적 성폭력은 기층여성민중을 탄압하고 유린하는 수단으로 작용했는데 이는 가부장적,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였기에 가능하다. 가부장제가 여성에 대한 집단적 폭력으로 실현되는 것에 더해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게 있어 가부장제가 하는 대응은 더욱 큰 폭력으로 여성을 억압하게 된다. 가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까지 낙인을 찍는 것이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성폭력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여성에게 행한 집단적 1차 성폭력 이후 다시 또 집단적 2차 성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작년에도 공권력에 의한 많은 성폭력이 발생하였다. 학생운동 탄압시, 노동운동 탄압시, 빈민 철거시 성폭력은 여성을 탄압하고 통제하는 수단이었으며, 여전히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은 다른 모순들과 결합된 양태로 드러나고 있다.

여기서는 그동안 대학 내 여성단위에서 개입했던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그 해결과정을 검토해보면서 앞으로의 대응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대학 내 여성운동단위들의 입장 및 사건 대응 과정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하고자 했으나 글쓴이의 미흡함과 자료의 부족(·, ·)으로 영성하기 이룰데 없으나, 이 글을 바탕으로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한 논의가 촉발된다면 다행일 것이다.

2.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응한 대학 내 여성운동단위들의 활동

[2. 대학내 반성폭력 운동 돌아보기]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1948년 4월 3일

계주 4.3항쟁.

이 당시 여성이 당한 피해는 고문과 성폭력, 포벌데·순경과의 강제 결혼 등 여러 형태로 밝혀지고 있다.

1978년 7월 17일

부산시 서부경찰서의 경찰과 방범대원이 몸수색을 한다는 명목아래 여성노동자를 목욕탕으로 끌고가 온건하고 일방적인 조서를 작성·납안한 후 구속시킨 사건.

1980년 5월 18~27일

광주 민주항쟁.

1984년

서울 청담파출소에서 있었던 김모양 성추행 사건.

1984년 11월

청량리 경찰서의 경위대 여대생 추행사건.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청량리 경찰서에 연행된 여대생들에게 경찰은 한웅감식 머리카락이 붙는 매질, 위계발로 짓밟기, 나체로 기합받기(생리중인 여학생까지 포함), 유방 조르르기 등의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수치심, 좌절감, 모멸감을 심어주었다. 때로 체지의 수탈으로 야만적인 성폭력이 서슴없이 자행되었다.

1986년 6월 6일

부천시 성고문사건.

1985년 2월 총선 이후 일어난 계엄부정으로 위기를 맞은 전두환 정권은 민주화세력과 민주세력을 과경용공, 복토로 몰아 격렬한 탄압을 일삼았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1986년 6월 6일 위장취업혐의로 연행된 권인숙 이라는 여대생이 부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성고문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1988년 12월 5일

대구 대면 1동 파출소 내에서 경찰관 2명이 한 여인을 변태적인 방법으로 온건한 사건. 가해경찰 2명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과 검찰이 하나가 되어 증거자료를 은폐, 조작하고 오히려 피해자인 강경순씨에게 무고죄를 적용시켜 구속하였다.

1987년 8월

전남 구룡군 김봉환 순경 사건.

1987년 8월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신명심은 전남 구룡군 경찰서 출장소 경장으로 파견된 김봉환에게 경관을 당했다. 출산후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남편은 김봉환에게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함께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을 접수한 검찰, 경찰은 가해자 김봉환을 옹호, 타른 곳으로 발령을 내고 이 사건을 간통사건으로 몰고 가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 고소는 기각되었고 피해자 신명심은 농약을 먹고 자살하였고 사건에 대한 진경을 들은 인권단체들은 '가정파괴범 김봉환 순경' 강간 공동대책위원회·회를 결성, 가해자 처벌은 물론 여성인권유린을 묵인, 조장하는 현정권의 비도덕성을 규탄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가해자 김봉환은 2년 뒤인 1989년 면직, 구속되었다.

1988년

대구 다방 종업원 강경순 온건사건.

당시 다방 종업원이었던 강경순이 귀가길에 경찰관 1명에 의해 파출소로 끌려갔고 모욕과 협박을 당한 후 파출소에 취사강에서 박순근, 김경부 두 명의 경찰관에게 온건당하고 성병까지 옮은 사건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피해자는 무고와 간통죄로 오히려 구속되었다. 경찰에 의한 여성인권유린 기관대회 등의 노력으로 강경순씨는 무고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두 경찰관은 무혐의 처리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이 사건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경찰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측면

21. 철거시 성폭력: 97년 행당동 철거시 성폭력 사건

1997년 9월 30일, 오전 9시경 서울 성동구 행당 1동 행당 1-2재개발(조합장: 예동해) 구역에 적준 철거장 패 용역 500여명이 군사작전을 감행하듯이 동네를 점령하고, 그중 조직 폭력배로 구성된 선발대 100여명은 동네 주민을 보는 즉시 남녀노소 가릴 것없이 무차별 구타하며 세입자 사무실로 쳐들어와 집단 성폭력을 자행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100여명의 장패들은 세입자 사무실을 점거하고, 그 안에 있던 10여명의 여자들에게 “청량리 외상X으로 나온 년들아, XX 닥았나, XX 에 물도 안나오는 것들, 저년들 죽여도 좋아, 전농동서도 죽었는데 까딱없어”라며 무차별 구타를 하기 시작했다.

적준 철거장패 현장소장 임화영은 명령했다. “저년들 옷 벗겨서 끌어내” 그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적준 장패용역들은 여자 1명에 4-5명씩 음흉한 웃음을 지으며 달려들어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 정신없이 구타당하던 여자들은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두손을 꼬아, 한손으로는 옷을 움켜쥐고 한 손으로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움켜쥐며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그러자 철거 장패들은 여자들을 엎어놓고 올라 타 머리를 방바닥에 짓이기는 등의 상상할 수 없는 야수같은 성폭력을 자행하였으며, 여자들의 젖가슴을 움켜 쥐고 공을 패스하듯이 이놈이 잡아서 저 놈한테 저 놈이 잡아서 이놈한테 돌려가면서 추행을 서슴치 않았다.

장패 철거용역 한 놈은 “내년들을 위해 XX에 다마를 10개나 박았다. 한번 해볼래” 하면서 허뿔을 풀러 바지를 내렸다 올렸다 하면서 달려들어 여자들은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지르며 공포를 떨며 주저앉았다. 결국 한 여자의 옷도리를 벗기고 저희들 끼리 히히덕거리며 젖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시작했다. 여자가 이에 저항하자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집단 로 짓밟는 등의 폭행을 하여 실신 지경에 이르자, 개 끝듯이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와 아랫도리마저 벗기고 구둑발로 차는 등 반인간적, 반인륜적 작태를 아무 꺼리낌없이 자행했으며, 이를 말리는 여자에게 폭력을 휘둘러 벽에 머리를 부딪쳐 실신케 한 뒤에 음부를 움켜쥐고 뒤흔드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이 통신에 공개된 후 성폭력 연대회의에서는 행당동 철거시 성폭력 규탄집회를 이대에서 개최하였으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 지역과 이후 지속적인 연대를 진행한 대학 내 여성운동 단위는 없으며, 자료 또한 남아있지 않다. 도시빈민연구소에서 이 사건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하였으며, 아시아에 있는 도시빈민연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있으나 이후 진행상황 역시 모른다.

22. 운동탄압시 성폭력: 97년 한총련 사태 -“빨갱이년들 당해도 싸다”

97년 8월 연세대에서 개최되었던 범민족대회는 공권력의 초공세적인 탄압과 한총련의 거센 저항으로 소위 ‘연세대 사태’라고 불린다. 그러나 당시 연세대 사태는 여성운동의 하는 우리에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다 크게 다가왔다. 8월 20일 대회에 참가했던 학생들이 대거 연행되는 과정에서 전경과 경찰에 의해 여학생들이 집단적이고 조직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던 것이다.

당시 범민족대회에 참가했던 k대 박모양 외 7명과 한국여성단체연합, 인권운동사랑방 등 7대 단체의 대표 8명이 11월 21일 진압 경찰과 현장집압책임자, 박일룡 경찰총장을 각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업무상의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제13조 [공공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 위반혐의, 위법률의 공범(교사, 방조) 혐의, [형법] 제7장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 제122조 [직무유기]의 혐의로 고소, 고발하였다. 검찰은 11월에 고소고발된 이 사건에 대하여 그 수사과 결과를 계속 지연시키다가 지난 3월 29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 하였다. 이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 민사소송으로 대응을 지속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다.

96년 당시 관악여성모임연대(추), 동국대 총여학생회, 연세대 여성자치연합, 한양대 여성위원회, 동덕여대 여성행동위원회가 모여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책위’를 구성하였으며, 검찰의 기소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과 선전전을 진행하였다. 불기소처분이 났을 때,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책위’에서 이에 분노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한총련 사태시 일어났던 성폭력 사건에 머무르지 않고 그동안 존재했던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활동을 지속하였다. 이후 97년 3월 31일, 동국대 총여학생회, 연세대 여성자치연합, 관악여성모임연대(추), 이화여대 여성위원회, 서울산업대 총여학생회, 동덕여대 여성 행동위원회, 한양대 여성위원회, 서울시립대 총여학생회, 성균관대 총여학생회 등으로 확장된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책위’는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한총련 사태 이후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대응 및 진행상황을 총화하고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하에서의 인권유린 및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여 추악한 불을 당한 추미애 의

원의 입장 등을 논의하였다.

이후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책위는 해소되었으나 이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 내 여성운동단위들은 97년 4월 국민대 교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었으며, 이후 '학내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로 전화하여 활동을 지속하였다.

23. 전쟁시 성폭력, 2000년 학생법정

3. 나쁜 판단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성폭력은 참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여성주의를 표방하며 나왔던 대학 내 여성운동단위들이 조직적으로 대응했던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은 그다지 많지는 않다. 이의 주된 이유는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대응이 진보적 학생운동세력/노동운동세력의 전유물처럼 여겨진 것에 있다. 물론 새로운 운동의 담론을 이야기하며 등장했던 여성운동단위들이 어느 정도 이전의 운동세력들과의 선을 긋기 위해 피해갔던 지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또 다른 원인을 찾자면 그동안의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대응이 진보적 학생운동세력/노동운동세력에 의해 주도되면서 섹슈얼리티의 개념이 탈락된 채 사건 해결이 진행되었던 것이 컸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의 정유석씨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87년 이후의 사건들은 가해자가 공권력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위의 경우처럼 집단적이라기보다는 소규모이거나 공권력을 등에 업은 개인의 사건들이었다.

1987년 전남 고흥군 김봉환 순경사건과 1988년 대구 다방 종업원 강정순 사건이후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개념정의는 전환을 맞게 된다. 공권력이 자행하는 성폭력의 대상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의 시위 참가자, 여성운동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행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는 것과 함께 그 사건의 당사자나 사건을 지원하는 단체들의 입장 표명에 변화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를 사건에 대한 규명이거나 피해 당사자의 진술을 통해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폭력이 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 수단으로 이용된 사실을 지적하며 공권력의 횡포를 규탄' (1984. 경희대 사건)

·'내가 겪고 있는 이 힘든 노력이 이 땅에서 고문을 없애는데 힘이 되기를 바란다' (1986. 권인숙 사건. 권인숙씨가 법정에서 한 진술)

·'성범죄의 피해자는 부끄러움으로 항상 입을 다물고 있어야만 한다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988. 강정순 사건. 강정순씨 진술)

·'피해 여대생들은 민주화탄압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성추행 당했다는 것과 인간이하의 대접을 받았다는 것에 분노함' (1996. 한총련사건)

·'우리는 우리가 자신의 생존권을 방어하지 않는다면 정권은 우리를 국민이 아니라 머슴으로, 노예로, 성폭행의 대상으로 삼을 뿐' (1999. 남양주 경찰서사건)

1984년, 1986년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당시 '인권'의 개념에는 성인지적 관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성인지적 관점이 배제된 인권개념은 비슷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권력을 지닌 남성에게 의한 성폭력이라는 측면은 간과하고 공권력에 의한 것으로만 규정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은 스스로를 여성, 여성 노동자, 여성 운동가보다는 운동가에 정체성을 두고 자신이 당한 피해도 여성이기 때문에 겪었던 피해라기보다는 민주화운동과정에서 탄압받는 민중으로서 겪은 피해로 정의하는 권인숙씨의 모습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1980년대 민족민중운동의 절정기에 민족민중운동에 복무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여성단체들이 90년대에 들어와 분파로 나누어지면서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대응의 입장 또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즉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개념이 등장했던 것이다.

이에 반해 1987년, 1988년, 1996년 사건들에서 피해자들은 민중의 인권을 억압, 유린하는 공권력자에게 대 한 문제제기보다는 가부장적 질서로 무장된 남성중심적 권력이 성적 약자인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으로 인식(특히 96년 한총련 사건)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이전의 접근들이 계급모순으로만 정의되고 있다면 1987년 이후의 일련의 사건들은 계급모순과 함께 나타나는 성모순의 결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정유석)

이러한 입장 및 개념의 변화는 대학 내 여성운동단위들의 변화와 맥을 같이 한다. 앞에서 소개했던 행당동 철거시 성폭력 사건과 한총련 사태시 성폭력 사건, 정신대 할머니들과의 연대는 대학 내 여성단위들이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서 여성주의적 입장을 구성하려고 힘쓴 흔적이다. 또한 배태준과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여성주의자 연대모임 camp가 99년 이정숙씨 사망사건 이후에 구성되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민족운동세력에 의해 주도되어왔던 기지촌 여성의 문제에 여성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개입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신대 할머니들과의 연대 이외에 대학 내 여성운동단위들이 지속적으로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응하는 일은 여전히 어려운 일로 남아있다. 정신대 할머니들과의 연대활동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로는 우선 정대협이라는 사회단체와 지속적인 연대가 가능하다는 점과 정신대 할머니들과 정대협에서 안정적으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수요집회-2000년 3월 1일이 벌써 400차 수요집회이다.), 전쟁시에 일어나는 성폭력 개념 및 입장에 대한 안정적인 논의의 과정이 존재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활동의 양태가 생성된다는 점(2000년 전쟁시 성노예 전범처리를 위한 학생법정, 민간법정) 등이다. 그러나 97년 행당동 철거시 성폭력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서 여성단체들과 달리 대학 내의 여성단위들은 다른 모순들(자본주의적 계급모순 등)과 결합되어 나타나는 성모순에 대해 어떠한 입장으로 개입해야 하는지 방향하고 있으며, 사건의 해결시 활동의 양태를 가져가는 데에도 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는 대학 내 여성운동단위 중 몇몇 단위를 제외하고는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그러나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여성주의는 존재해야 된다. 우선 이러한 가부장적 권력의 폭력적 발현인 성폭력은 단지 '권력, 공권력의 인권유린'의 맥락으로만은 설명될 수 없으며 그러한 단일 개념 하에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의 인권에 대한 논의만으로는 여성의 경험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사회·경제·문화적 권리 등 기존의 인권협약을 기반으로 한 인권논의가 여성이 당하는 인권유린을 취급하고 있지 않았다는 인식은 이 시점에서 너무도 필요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 모색에 있어서 섹슈얼리티의 관점이 반드시 주요한 축이 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기간의 반성폭력 담론이 '피해'자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보호'의 입장으로 맥을 어느정도 같이 했던 보수적 세력과의 결별의 지점으로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개념이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에 대한 보수적 관점에서는 성폭력의 가해자는 부도덕한 개인일 수밖에 없으며, 가부장제라는 물질적인 체제 속에서 성폭력이 발현된다는 입장은 동의될 수 없다.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은 가부장적 사회체제 하에 가능한 산물이며, 특히 다른 모순들과 결합되어 드러나는 성모순의 재현이다. 이를 여성적 관점에서 구성하고 결합되는 다른 모순에 대한 싸움과 연대하는 과정에서 여성운동의 성폭력 개념은 확장되고 재구성될 것이다.

그러므로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한 대학 내 여성운동단위들의 입장을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camp에서는 그동안 대학 내 여성운동단위들이 기화에 참여하면서 기지촌 여성들과 대학내 여성들의 연대를 현재 여성에게 스스로의 '몸에 대한 권리'가 탈락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성의 상품화 맥락에서 설명하려고 했던 시도를 비판하면서 구체적 현실에서 결합되어 기형적으로 드러나는 기지촌 여성들의 구체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동안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대해 대학 내 여성운동단위들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가졌던 입장은 크게 그것이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단일한 입장을 세우고 사건을 대응해갔을 때, 80년대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을 인권의 개념만으로 혹은 민주화운동 억압의 수단으로만 대응했을 때 성폭력에 대한 입장을 구성하지 못함으로써 한계를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계를 갖게 된다.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은 다양한 모순들이 중첩된 상황에서 발생하며 성모순 또한 그 발현의 형태는 성폭력이지만 다른 모순들과 중첩된 기형인 것이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상황에서 성폭력을 바라보아야 하며 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으로 성폭력 사건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